

#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주시장

## 1. 제안이유

시본청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비능률적인 요인중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일부조직의 통·폐합 조정 및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을 요구함

## 2. 주요골자

- 가. 공업단지 조성 업무와 입주업체 분양 및 관리 업무를 분리(안 제6조)
- 나. 수도과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신설함(안 제7조 제5항)
- 다. 단순민원, 창구즉결 민원에 대한 전담부서 지정(안 제7조 제7항)

## 과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과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2호" 내지 "제15호"를 "제11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제15호 "호직 및 여권관리"를 "호직관리"로 하고,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민의식 개혁운동 지원 및 육성
17. 외국인 등록

동조 제3항 세무과의 분장사무중 제9호의 "공채·국채·금융"을 "공과금 수납대행점 관리"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의 과소관업무 기획조정

동조 제7항 제3호의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공업단지 입주업체 분양 및 관리"로 하고, 동항 제24호의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및 관리"를 "노동조합의 관리 및 지도"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주택과"다음에 "수도과"를 신설하며, 동조 제2항 건설과의 분장사무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2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의 과소관업무 기획조정

동조 제3항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제4호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도시 계획도면 정리"로 하며, 동항 "제8호" 내지 "제1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 "제5항" 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검침 및 부과징수
4. 간이·전용상수도 설치 및 관리
5.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6.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7. 기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동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 제7항에 "제23호" 내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
24. 창구즉결민원 처리
25. 군사보호구역 사전협의 민원처리
26.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27. 여권 신청 및 교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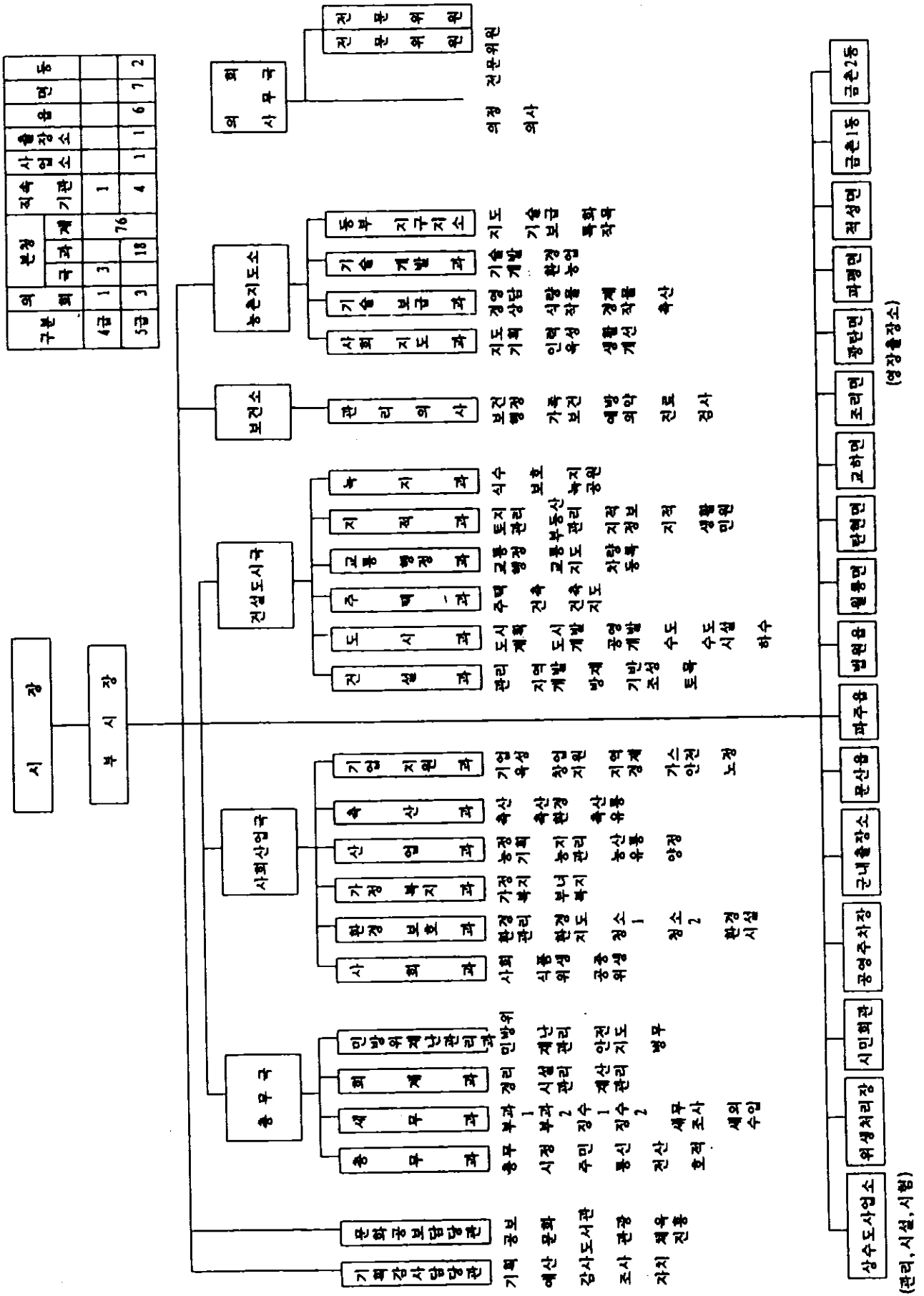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조 (기획감사담당관)</p> <p>1. ~10 (생략)</p> <p>11. <u>외국인 등록관리</u></p> <p>12. - 15. (생략)</p> <p>제5조 (총무국)</p> <p>① (생략)</p> <p>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14. (생략)</p> <p>15. <u>호적 및 여권관리</u></p> <p style="padding-left: 2em;">(신설)</p> <p style="padding-left: 2em;">(신설)</p> <p>③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u>공채·국채·금융</u></p> <p>④ ~⑤ (생략)</p> <p>제6조 (사회산업국) ① (생략)</p> <p>②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em;">(신설)</p> <p>1. - 11. (생략)</p> <p>③~⑥ (생략)</p>	<p>제3조 (기획감사담당관)</p> <p>1. ~10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11. -14. (중전 제12호 내지 제15호와 같음)</p> <p>제5조 (총무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호적관리</u></p> <p>16. <u>시민의식 개혁운동 지원 및 육성</u></p> <p>17. <u>외국인 등록</u></p> <p>③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공과금 수납 대행점 관리</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 (사회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u>국내의 과소관업무 기획조정.</u></p> <p>2. - 12. (중전 제1호 내지 제11호와 같음)</p> <p>③~⑥ (현행과 같음)</p>	<p>총무과로이관 호의순서변경</p> <p>사회진흥계 신설 기획감사실에서 이관</p> <p>금융업무변경</p> <p>호의순서변경</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⑦ 기업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u></p> <p>4. - 23. (생략)</p> <p>24. <u>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및 관리</u></p> <p>25. - 28. (생략)</p>	<p>⑦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공업단지 입주업체 분양 및 관리</u></p> <p>4. - 23. (현행과 같음)</p> <p>24. <u>노동조합의 관리 및 지도</u></p> <p>25. - 28. (현행과 같음)</p>	<p>공단조성은 도시과에서</p> <p>설립업무는 노동부روی관</p>
<p>제7조(건설도시국)① <u>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과를 둔다.</u></p>	<p>제7조(건설도시국)① <u>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녹지과를 둔다.</u></p>	<p>수도과 신설</p>
<p>②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신설)</p> <p>1. - 13. (생략)</p>	<p>② - - - - -</p> <p>1. <u>국내의 과소관 업무 기획조정</u></p> <p>2. - 14. (중전 제1호내지 제13호와 같음)</p>	<p>호의순서변경</p>
<p>③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도시계획확인원 발급</u></p> <p>5. - 7. (생략)</p> <p>8. <u>간이상수도 관리업무</u></p> <p>9. <u>상수도에 관한 업무</u></p> <p>10. <u>하수도 기본계획</u></p> <p>11. <u>하수도에 관한 업무</u></p> <p>12. - 14. (생략)</p>	<p>③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도시계획 도면 정리</u></p> <p>5. - 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8. - 10. (중전 제12호 내지 제14호와 같음)</p>	<p>발급은 지적과로 이관</p> <p>수도과로이관</p> <p>'</p> <p>'</p> <p>호의순서변경</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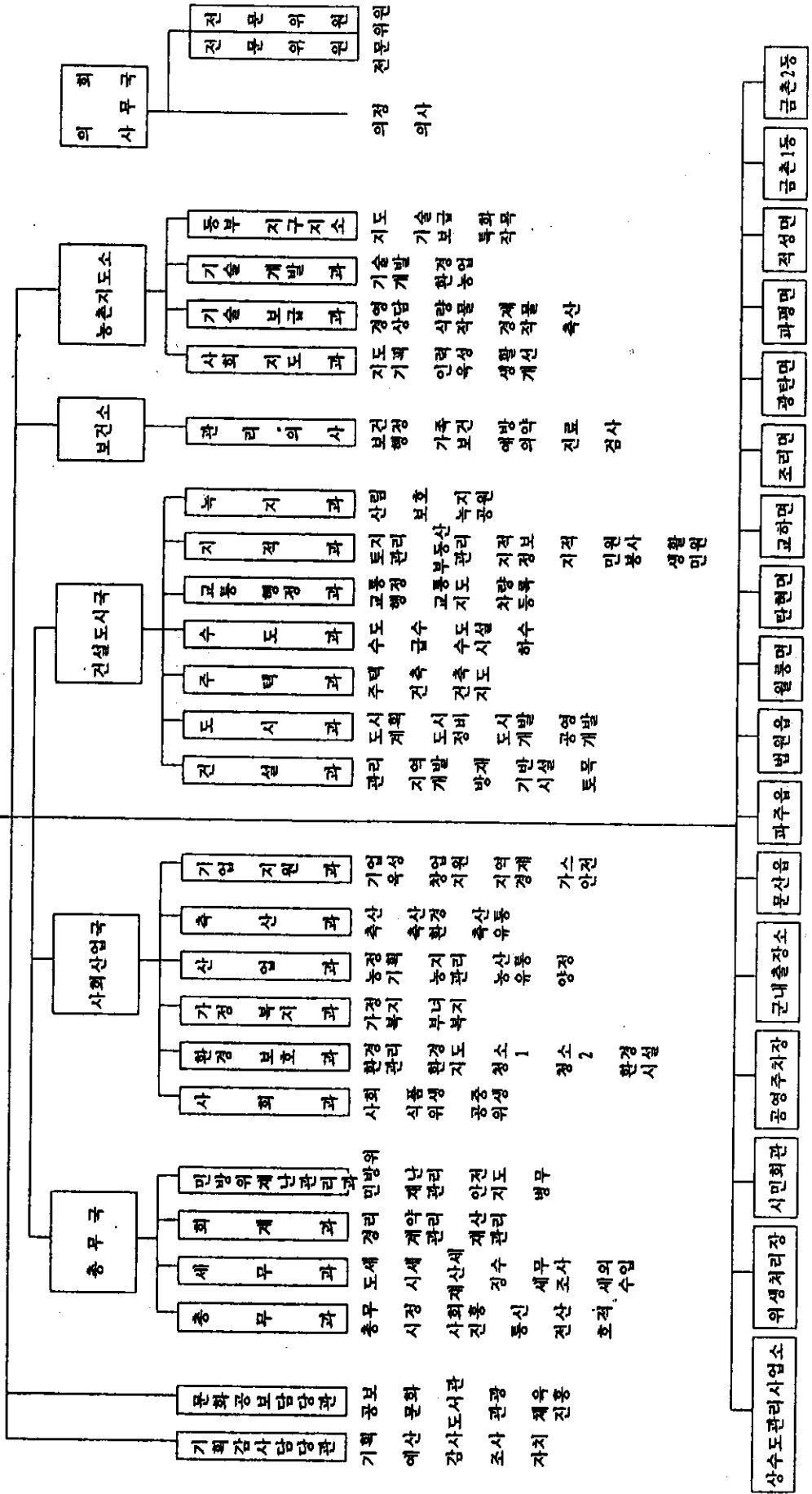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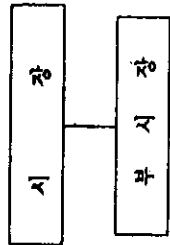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⑤ 수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 및 조정</p> <p>2.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p> <p>3. 상수도 검침 및 부과징수</p> <p>4. 간이·전용 상수도 설치 및 관리</p> <p>5.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p> <p>6.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p> <p>7. 기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p>	<p>수도과 신설</p>
<p>⑤ (생략)</p>	<p>⑥ (종전제5항과 같음)</p>	<p>항 순서변경</p>
<p>⑥ (생략)</p>	<p>⑦ (종전제6항과 같음)</p>	<p>.</p>
<p>1. - 22. (생략)</p>	<p>1. - 22. (현행과 같음)</p>	<p>.</p>
<p>(신 설)</p>	<p>23.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p>	<p>단순민원의</p>
<p>(신 설)</p>	<p>24. 창구즉결민원 처리</p>	<p>창구 일원화</p>
<p>(신 설)</p>	<p>25. 군사보호구역 사전협의 민원처리</p>	<p>.</p>
<p>(신 설)</p>	<p>26.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p>	<p>.</p>
<p>(신 설)</p>	<p>27. 여권신청 및 교부</p>	<p>.</p>
<p>⑦ (생략)</p>	<p>⑧ (종전제7항과 같음)</p>	<p>.</p>

# 坡州市 機構表



# 坡州市 機構表

구분	의 회		직속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과	계			
4급	1	3	1		
5급	3	19	4	1	6
		78		7	2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 ☎(0331)249-4093 / FAX 249-2228 담당 공재광

문서번호 자치 12200 - 1003  
 시행일자 1997. 4. 11. ( 년)  
 ( 경유 )  
 발 을 받는곳 참조  
 참 조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1997. 4. 12	시	
수	번호	3089	결	
처	리	과	재·공	
담	당	자	람	

제 목 기구.정원 조정 승인

1. 부천 총무 12200-3214 ('96. 12. 24)호 및 파주 총무 12130-791 ('97. 3. 24)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소속기관 정원으로 본청기구를 설치코자 승인신청한 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6항에 의거 승인하니 관련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기구.정원 조정 승인서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 부천, 파주 (총무과장)

# 기구 · 정원 조정 승인서

구 분	직 위	직 렬	직 급	정 원	비 고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소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5 급	△1	
	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6 급	△1	
	시설계장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6 급	△1	
	시험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6 급	△1	
	소 계			△4	
수 도 과  상수도사업소  도 시 과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5 급	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1997. 4. 11 경기도지사                 </div>
	급수계장	지방행정주사	6 급	1	
	소 장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급	1	
	도시정비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6 급	1	
	소 계			4	
합 계				0	

※ 정원시행일 : 1997년 4월 11일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p>●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p> <p>(1994.12.31 대통령령 제14480호)</p> <p>개정 1995. 5.16 대통령령 제14647호  1995.12.28 대통령령 제14841호  1996. 8.22 대통령령 제15140호  1996.11.18 대통령령 제15167호(지방공무원임용령)  1997. 2. 4 대통령령 제1526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p> <p>(1994.12.31 내무부령 제638호)</p> <p>전문개정 1997. 2. 4 내무부령 제704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地方自治法</p> <p>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p>	

〈地方自治法〉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  
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4·3·16, 94·12·20〉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 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  
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  
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4·3·16〉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  
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 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改正 94·3·16〉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맞시행령

(부록 참조)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p>제3장 시·군·구의 기구</p> <p>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 규칙으로 시·군·구 본청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5개이내의 실·과·담당관으로 한다)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다만, 기존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 정수범위안에 서, 실·국과 그 하부조직인 실(실장이 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과·담당관(담당관이 과장급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p>	

기 구 정 원 규 정	동 시 행 규 칙
<p>1. 본청 실·국 및 실·과·담당관을 설치기준의 범위내에 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p> <p>2. 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p> <p>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과 실·과·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p> <p>⑥시장·군수·구청장은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 및 실· 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한다.</p> <p>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 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p>	